

전기안전관련 직무고시 중 진단업체 설립 요건(2018년 12월 25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일반답변)

[질문]

『제5조(안전점검 및 측정) : ⑤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에서

외부전문기관 및 진단업체 창업 요건

[답변]

-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소유자가 필요에 의하여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은 「전기사업법령」 상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산업부에서는 장비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 진단업체 선정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신고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이 가능함을 유권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결론]

-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자3명 이상(특급기술자 1명 + 기술자 2명 <= 3명 이상)
- 엔지니어링을 수행 할 수 있는 사무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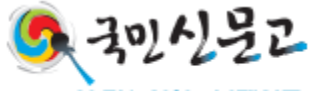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3. 2013년 1월 1일 이후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국 가 기 술 자 격 자	학력자
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지원처 기술진단부		
담당자(연락처)	남궁진 (063-716-2661)	신청번호	1AA-1812-410041
접수일	2018-12-28 09:12:5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85758
처리 예정일	2019-01-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9-01-04 17:43:20
처리결과 안내	○ 전기안전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1항의 별표 3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따라서, <u>기술인력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 이상이고,</u>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나 있으실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지원처 기술진단부(063-716-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